

# 정 관

주식회사 지이에스  
제정 2004년 1월 27일.  
개정 2009년 3월 30일.  
개정 2010년 12월 10일.  
개정 2013년 3월 28일.  
개정 2014년 1월 17일.  
개정 2017년 3월 31일.  
개정 2018년 3월 30일.  
개정 2018년 7월 6일.

##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지이에스 라고 부른다.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통신 장비 개발, 제조업
1. 보안기기 개발, 제조업
1. 정보통신 공사업
1. 전기 공사업
1. 소방/방재관련 설계,감리,점검 및 시설공사업
1. 에너지 진단사업
1. 에너지 절약전문사업
1. 기타 에너지 이용합리화 관련사업
1. 전자통신 부품 도소매업
1. 통신판매업
1. 정보보안 및 보안인증 관련업
1. 전기 및 전력 장비 개발, 제조업 <17. 03. 31. 추가>
1.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발전업 <17. 03. 31. 추가>
1.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1. 당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내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ges.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 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 시에 2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① 일반 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④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⑥ 회사가 장단기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5.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8조 규정을 준용한다.

9.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1.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3조(주권의 재발행)** 1.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이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1. 당(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제1항의 경우이 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고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貳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1. 당(이) 회사의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이 있을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3장 사 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

- 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 기준일은 당해 영업년도말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익일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 기준일은 당해 영업년도말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장 주주총회

**제20조(소집)**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삼월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21조(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 회사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貳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參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6조의2(서면 및 인터넷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및 인터넷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인터넷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면 및 인터넷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30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이)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제32조(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감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백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3조(이사와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원정수가 되고 또한 업무 집행 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參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이사회) 1.**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한 때에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보 할 수 있다.

**제3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는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제40조(업무집행) 1.** 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42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정한다.

## 제5장 계 산

**제43조(영업년도)** 당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1.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六주간전에 다음의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일 壹주간 전부터 당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拾분의 壹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 이월금 약간

**제46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부 칙

**제47조(최초의 영업년도)** 당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소와 그가 설립 시에 인수한 주식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지이에스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04년 1월 27일 제정  
2009년 3월 30일 개정  
2010년 12월 10일 개정  
2013년 3월 28일 개정  
2014년 1월 17일 개정  
2017년 3월 31일 개정  
2018년 3월 30일 개정

2018년 7월 6일

상 호 주식회사 지이에스

대표이사 이 용 철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남로 230 분당테크노파크 E동 710호

위와 같이 주식회사 지이에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정관을 개정하였음을 확인 합니다.